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낙시어선 승객,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 운항, 승객 안전사고예방,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17.

보 성 군



낙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낙시어선의 승객은 낙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부터 승객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 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해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사항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낙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낙시어선업 신고를 마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4.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낙시인은 선상낙시 또는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안내 받아 낙시중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시거나 위험물 반입 및 운송,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인명구조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 바. 영업제한구역이나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낚시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사.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류(油類)·분뇨·미끼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 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자.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 등 낚시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4.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업의 규모 및 영업제한시간
 - 가.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중 선외기 설치어선은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낚시어선검사(최대 승선 인원 부여 등)를 받은 총톤수 0.5톤이상 3톤미만 어선

나. 영업시간 제한(입출항기준)

- 하절기(4. 1. ~ 10. 31.) : 22:00 ~ 익일 02:00
- 동절기(11. 1. ~ 3. 31.) : 21:00 ~ 익일 03:00
-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 : 연중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단)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증서 상에 항해시간을 적용한다.

5.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사항

가. 선원의 증원 및 교체

- 입출항 신고시간을 기준으로 전날의 운항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선장(선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운항횟수 : 제한없음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항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함.

다.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

- 보성군 관내 : 인공어초시설지구 - 세부위치 : 따로붙임
 - 득량 비봉해역 : 28ha
 - 회천 객산해역 : 16ha
 - 회천 전일해역 : 20ha

※ 전남도 및 도내 타시군에서 따로 고시 또는 공고한 영업제한구역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승객에게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출항 전 선체·기관·통신·구명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음주 및 약물복용(환각물질 등)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취자·정신질환자·환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무인도에 낚시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야영을 금지시켜야 하며,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낚시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잠수어업인 물질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때 승선자란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 선상낚시인 및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무인 도서 및 갯바위 낚시터로 안내받은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자를 말한다.
- 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밖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등 위험지역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6. 벌칙 및 과태료 사항

- 낚시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또는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및 제5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부 칙

- 이 고시 시행 후 보성군 고시 제2012 - 60호, 제2013 - 36호, 2015 - 23호는 폐지한다.

※ 인공어초시설지구 세부위치

지선명			시설 년도	어초 종류	시설 물량(개)	경위도
시·군	읍·면	리·동				
계					834	
보성	회천	전일	1998	육교형	224	N34° 38' 53" E127° 04' 11" N34° 38' 58" E127° 04' 15"
	회천	전일	1998	육교형		N34° 38' 46" E127° 04' 24" N34° 38' 57" E127° 04' 35"
보성	득량	선소	1999	사각형	100	N34° 41' 02" E127° 10' 57" N34° 41' 10" E127° 11' 09"
	득량	선소	1999	사각형		N34° 40' 52" E127° 11' 07" N34° 41' 00" E127° 11' 19"
보성	득량	선소	2009	신요철	102	N34° 41' 619" E127° 11' 365"
	득량	선소	2009	신요철		N34° 41' 607" E127° 11' 333"
	득량	선소	2009	신요철		N34° 41' 618" E127° 11' 328"
	득량	선소	2010	신요철	408	N34° 41' 611" E127° 11' 341"
	득량	선소	2010	신요철		N34° 41' 635" E127° 11' 443"
	득량	선소	2010	신요철		N34° 41' 607" E127° 11' 415"
	득량	선소	2010	신요철		N34° 41' 576" E127° 11' 374"